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(임이자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10522

발의연월일: 2025. 5. 14.

발 의 자:임이자·주호영·김용태

신성범 • 이달희 • 조승환

조지연 · 김위상 · 우재준

유용원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영동 지역과 같은 산악 지역에서 건조한 기후와 강한 바람으로 산불이 빠르게 확산하는 경우 인공강우기술을 활용한 기상조절이 산불확산 차단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.

그런데 현행법에는 기상조절의 규제 중심으로 규정이 마련되어 있고, 기상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기상청장은 산불·가뭄 등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 조절 관련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국가 차원 의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 추진의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(안 제18조의2 신설 등).

법률 제 호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기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8조의2(기상조절 실험·연구 추진 등) ① 기상청장은 산불·가뭄 등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하여 기상조절 에 관한 실험 및 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.
 - 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에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 - ③ 그 밖에 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법률 제19조의3제1항 전단 중 "재난 (이하 이 조에서 "기상재난"이라 한다)"을 "재난(이하 "기상재난"이라 한다)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제18조의2(기상조절 실험・연구
	추진 등) ① 기상청장은 산불
	∙가뭄 등 제19조의3제1항에
	따른 기상재난의 예방 등을 위
	하여 기상조절에 관한 실험 및
	연구를 추진할 수 있다.
	② 기상청장은 제1항에 따른
	기상조절 실험 및 연구에 필요
	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
	방자치단체 또는 「공공기관의
	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공
	공기관에 협력을 요청할 수 있
	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
	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
	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	③ 그 밖에 기상조절 실험 및
	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은
	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	법률 제20847호 기상법 일부개정
법률	법률
제19조의3(기상재난 방지를 위한	제19조의3(기상재난 방지를 위한
기관 간 협력 등) ① 기상청장	기관 간 협력 등) ①
은 기상현상으로 인한 「재난	

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제 1호의 <u>재난(이하 이 조에서</u> "기상재난"이라 한다)에 대한 기관 간 연계 대응을 강화하고 생산된 예보 및 특보를 효과적으로 전달·통보하며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상재난 피해현황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의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.

② · ③ (생 략)

<u>재난(이하 "기상재난"이</u>
라 한다)
<u>.</u>
②·③ (현행과 같음)